



보도	2026.2.5.(목) 14:30	배포	2026.2.5.(목)		
담당 부서	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	책임자	실장	오정근	(02-3145-8730)
		담당자	팀장	김철영	(02-3145-8888)

**금융감독원-보험업계,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
실손 보험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 등 강력 대응 기조**
-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'26년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-

< 주요 내용 >

- ◆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, '26년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,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조사 등에 대해 집중 논의
 - (보험사기 조사 강화) 실손*·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상사·기획 조사 및 보험사기 알선·유인행위 등에 대한 조사 강화 등
 - * 실손 보험사기 「특별 신고·포상 기간」 운영 중('26.1.12.~3.31.)
 - (소비자 권익 보호)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 할증된 보험료 적극 환급, 비자발적 보험사기 연루 환자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 합리화 등
 - (대국민 홍보) 보험사기 대응요령 등 연령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,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진입시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 확대 추진 등
- ◆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수사당국·보건당국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 예정

<실손 보험사기 「특별 신고·포상 기간」 운영(☎'26.1.11. 보도자료 참조)>

- ① 신고기간 : '26.1.12.(月) ~ 3.31.(火)
- ② 신고대상 :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·의원, 의사, 브로커 등
- ③ 포상금액·지급 대상 : 5천만원(신고인이 병·의원 관계자), 3천만원(신고인이 브로커), 1천만원(신고인이 환자 등 병·의원 이용자)
- ④ 신고방법 :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(☎1332-4-4번 또는 온라인 등)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

I. 개요

- '26.2.5.(목)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(SIU, Special Investigation Unit)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*하였습니다.

* (일시/장소) '26.2.5.(목) 14:30~17:00,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
(참석자) 금융감독원 부원장보, 보험사기대응단 실·팀장, 생·손보험회 및 보험회사 SIU 담당 임원·부서장 약 70명


- 금융감독원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,
 -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 모두 합심하여 '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한다'라는 강력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.
 - 최근에는 일부 의료기관이 선의의 환자를 속여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*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므로,
 - * (예시) 병원은 환자들에게 영양수액,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면서 도수·통증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
 - 이러한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.
 - 또한 신속한 보험사기 조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* 등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.
 - * (환급 절차)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(보험계약자 등)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고지 후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

II. 주요 논의내용

◇ ①'26년 보험사기 대응 계획, ②보험사기 적발 우수 사례 및 ③보험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

1

'26년 보험사기 대응 계획

	<p>소비자보호 관점의 보험사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비자발적 보험사기 연루 환자에 대한 조사 합리화 ·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지체, 삭감 등 되지 않도록 주의 	
<p>실손·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비만치료 후 진료기록부 허위 발급 등 악성 보험사기 조사 강화 ·음주운전 은폐 등 선량한 운전자 피해 차단을 위한 자동차 보험사기 신속 조사 	<p>보험사기근절</p> 	<p>대국민 홍보 등 사전적 예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일반 국민에게 보험사기 대응 요령 등을 알리는 집중 홍보 실시 ·고의사고 다발지역 진입 시 내비게이션 사고 유의 음성 안내 서비스 확대 추진

가. 신종·악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조사 강화

- 금융감독원은 '26년 신종·악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.
- 우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일부 병·의원이 피부미용 시술(실손 미보장) 등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(예: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)로 발급하는 등의 악의적인 사례가 지속 나타남에 따라 실손 보험 사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이와 관련된 상시·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

○ 최근에는 특히 고가의 비급여 비만치료제의 보급이 확대됨과 동시에 수요도 증가하는 만큼 해당 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환자를 유인·권유*하는 등 선의의 환자를 보험사기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포착되어 이에 대한 보험사기 적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.

*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 등을 물으면서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유도(☞ 해당 행위는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§5의2에 따라 처벌 가능)

○ 그 일환으로 현재 실손 보험사기 「특별 신고·포상 기간」을 운영 중으로 적극적인 제보가 조사·수사 등 적발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,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또한 실손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가해자·피해자 공모를 통한 고의 사고, 음주운전 은폐 등 선량한 운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 및 적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.

<실손 보험사기 「특별 신고·포상 기간」 운영>

- ① 신고기간 : '26.1.12.(月) ~ 3.31.(火)
- ② 신고대상 :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, 의사, 브로커 등
- ③ 포상금액 및 지급* 대상 : 5천만원(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), 3천만원(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), 1천만원(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)

* 제보 시 구체적인 물증(녹취록 등) 제시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 적극 협조 시 지급
 ※ 제보 유인 강화를 위해 상기 '특별 포상금' 이외 생·손보험회에서 운영 중인 '보험범죄 신고포상금'을 추가 지급

- ④ 신고방법 :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(☎1332-4-4번 또는 온라인 등)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

※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.

나.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대응

- 금융감독원은 엄정한 보험사기 대응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보험사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.
 - 과거의 보험사기는 나이롱환자 등 단편적인 보험사기였다면 최근에는 의료·보험분야에 지식을 보유한 의료인·보험설계사 등이 선의의 환자를 유인하여 보험사기에 끌어들이는 수법 등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.
 - 이에 환자들은 보험금 허위 청구 등 보험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측면이 있어 비자발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된 선의의 환자에 대한 조사를 합리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
 - 또한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가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*되어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기 조사를 명목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또는 삭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
 - *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제5조 제2항 :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.
- 한편, '24.8.14.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* 의무 등이 법제화된 만큼
 - * (환급 규모) '09.6월 이후 '24년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약 2만 2천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99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.
 -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자(운전자)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적극 환급하여 소비자피해 구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.

다.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

-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대응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·손보험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 등 사전예방적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청년층 등 타겟별 홍보물을 제작하여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 진입 시 운전자가 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는 등 소비자가 일상 생활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유의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.
- 이러한 집중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해 '남들도 다 하는데'라는 안이한 생각 대신 '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'라는 점을 일반 국민에게 적극 전달하여 금융소비자가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2

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

- 금융감독원이 '25.7.31.~9.26. 기간 중 주최한 「'25년 보험사기 방지 경진대회」에서 수상한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 등을 보험 업계와 공유하였습니다.
- 보험회사 등은 공유된 조사기법 등 노하우(know-how)를 유사 수법의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으며, 앞으로도 보험사기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수시로 공유할 계획임을 안내하였습니다.

[보험사기 적발 우수 사례]

① (보험사기 목적 의료기관 설립) 실손보험금을 편취*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자금팀·알선상담팀·보험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적 범죄단체를 적발

*실제로는 모발이식, 필러 등 고가 미용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도수·무좀치료 등의 치료 행위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금을 편취

② (GA의 보험사기 적발): 보험대리점, 보험설계사, 치과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이 결탁한 치아보험 사기* 등 다수 적발

*질병으로 인한 치아 치료를 하면서 상해사고로 조작하여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

- 금융감독원이 '25년중 실시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.
-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점검 계획을 수립·실시하고 점검범위,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.
- 또한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내부 징계 시 회사의 자체 징계 양정 뿐만 아니라 법원의 통상적인 형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.

Ⅲ. 결언 및 향후 계획

- 금번 간담회는 '26년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, 보험사기 조사 역량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습니다.
- 더욱이 올해는 실손 및 자동차 등 국민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인 만큼
 -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보험사기 혐의 인지 및 조사가 필요하고 현재 실손 보험사기 「특별 신고·포상 기간」이 운영 중이므로 신고자의 소중한 제보에 귀를 더욱더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.
-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·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.